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02 발의연월일: 2021. 1. 27.

발 의 자:이주환·김기현·김석기

박대수 · 서일준 · 성일종

윤창현 · 이명수 · 정동만

최승재 • 한무경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상화폐 및 관련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거래소의 해킹이나 거래시스템 오류로 인한 매매 피해 및 시세조작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되고 있으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작, 가상화폐 투기 및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일본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에 포함하여 관련 상품 거래 시거래유인 목적의 허위 시세 활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는 입법 장치를 마련함.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 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7조의2 신설, 제18조 및 제20조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11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2(준수사항)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가상자산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가상화폐를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 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 나.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가상화폐를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 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 다. 그 가상자산의 매매 등을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 등을 하는 행위

- 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 2. 가상자산거래를 유인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그 가상자산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를 변동시키는 가상자산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수탁을 하는 행위
 - 나. 그 가상자산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 다. 그 가상자산거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는 행위
-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산자산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가상자산거래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인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 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제8조의3(손해배상책임) 제8조의2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벌칙)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제18조 중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을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 의2에서 규정한"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8조를"을 "제8조 또는 제8조의2제2항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113호 특정 금융거래정	법률 제17113호 특정 금융거래정
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률 일부개정법률
<u> <신 설></u>	제8조의2(준수사항) ①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거래 분쟁의 발
	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상자산거래가 성황을 이루
	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
	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하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
	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가상화폐를 매수할 것
	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나.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
	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가상화폐를 매도할 것

 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다. 그 가상자산의 매매 등을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 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 등을 하는 행위

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2. 가상자산거래를 유인하기 위 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그 가상자산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가상 자산을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변동시키는 가상자산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하는 행위

나. 그 가상자산의 시세가 자

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다. 그 가상자산거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를 하거 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는 행위

-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산자산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가상자산거래에 있어서 「전 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인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

<신 설>

<신 설>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 으로 발생한 사고

제8조의3(손해배상책임) 제8조의2 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 만, 가상자산사업자가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7조의2(벌칙)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 <u>란한 경우 또는</u>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 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제1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6 제1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6 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를 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서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並科)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 1. 2. (생략)
- 3. <u>제8조를</u> 위반하여 조치를 하 지 아니한 자
- 4. (생략)
- ②·③ (생 략)

<u> 규정한</u>	
제20조(과태료) ①	
<u>.</u>	
1. • 2. (현행과 같음)	
3. 제8조 또는 제8조의2제2항을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